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「국제개발협력기본법」에서 정한 중점협력대상국 중 국토교통 국제개발 협력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선정된 중점지원 국가에 대한 집중지원 근거 및 절차를 마련하고, 도시개발, 스마트시티, 철도 등 분야별 협력모델을 제시하여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

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⑤ 총괄담당관은 신규사업 발굴을 위하여 국토교통 관련 공공기관, 유무상원조기관, 투자개발사업기관 등 유관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.

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2(중점지원 국가의 지원 등) ① 총괄담당관은 중점지원 국가에 대해 당해연도 국토교통 국제개발협력사업 예산의 50% 범위 내에서 우선 배분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사업예산을 배분하기 위하여 중점지원 국가와 협의를 추진할 수 있다.

- ② 총괄담당관은 중점지원 국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별 협력방안을 제안 및 지원할 수 있다.

1. 도시개발 : 도시개발 컨설팅, 타당성분석 등 사업초기단계 지원 및 사업화 시 투자개발사업, 대외경제협력기금 등과의 연계 지원
2. 스마트시티 : 스마트시티 협력센터 등을 거점으로 기술이전 및 실증 시범사업 등 발굴 지원
3. 철도 : 기본계획 수립, 타당성분석 등 사업 발굴단계부터 설계 및 시

범사업, 본공사 이후 운영 컨설팅 등 사후지원까지 유무상연계 패키
지 지원

4. 역량강화 : 단순 견학이 아닌 현장실습 위주의 인프라 관련 기술교
육 및 전수 지원

제22조 중 “하며 2026년 12월 31일”을 “하는 2027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2조(유효기간) 이 훈령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

2. 스마트시티 : 스마트시티 협력센터 등을 거점으로 기술이전 및 실증 시범사업 등 발굴 지원

3. 철도 : 기본계획 수립, 타당성 분석 등 사업 발굴단계부터 설계 및 시범사업, 본공사 이후 운영 컨설팅 등 사후지원 까지 유무상연계 패키지 지원

4. 역량강화 : 단순 견학이 아닌 현장실습 위주의 인프라 관련 기술교육 및 전수 지원

제22조(유효기간) -----

는 2027년 12월 31일-----
-----.